견책처분취소

소송종류	행정소송	법 원 명	인천지방법원
사건번호	2019구합○○○○○ [1심]	사건유형	공무원신분
원 고	□□□	피 고	인천광역시교육감
판결선고일	[1심]2020. 1. 17. 원고승소	비 고	
사건개요	❍ 원고는 2015. 8. 20. ~ 2018. 8. 20. ○○○○○○학교 교장으로 파견 근무하였는데, 교사 추가채용과 관련하여 채용시험의 응시자로 하여금 채용업무를 담당하도록 지시하고, 응시자로 하여금 면접위원들이 서명한 2차 면접심사 결과표에 점수를 기재하라고 지시하는 등 직장연고 및 본인의 직위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특혜를 준 혐의를 받음. 시교육청은 교육공무원특별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(견책) 결과에 따라 2019. 3. 14. 원고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음. ❍ 원고는 위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2019. 3. 26.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,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9. 6. 19. 기각결정을 하였고, 원고는 사실을 오인하고 재량권의 일탈·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.		
주 문	1. 피고가 2019. 3. 14. 원고에 대하여 한 견책 처분을 취소한다. 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		
판결이유	❍ 징계사유 유무에 관한 판단 -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, 갑 제3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,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이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.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, 징계양정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.		
결 론	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		